



제 433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 명시 등〉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40호)

2025.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1인

나. 제안일 : 2025. 11. 6.

다. 회부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사회투자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본 법에 근거해 설치한 계정은 시행령상 일부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활용될 수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반면,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유엔(UN)은 올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

서 “사회연대경제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기관을 재원 수혜자이자 공급자로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재원의 필수 행위자로 인정”한다면서, 지역적·국가적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이들 기관의 접근성을 촉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정책적 목표를 확장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 나. 진흥원의 업무 및 사업수행기관의 의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27조).
- 다.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함(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업무에 사회연대 경제조직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현행 진흥원의 계정 중 하나인 ‘자활 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당 계정에서 사회 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55 조의3 등).

○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 신용보증, 투자, 출연·출자 등의 사업을 의미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u>채무조정</u> 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채무조정</u> 등-----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u>

<신 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
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
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
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 의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
적기업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소셜
벤처기업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5의3.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u>위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사업</u> <u>나.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사업</u> <u>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 또는 출자</u> <u>라.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
6. “사업수행기관”이란 <u>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u>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u>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u> 또는 <u>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제5호의3가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u>----- ----- -----.
7.·8. (생략)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u>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1. (생략) <u><신설></u> 2. ~ 16. (생략) ② ~ ④ (생략)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u>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u>	7.·8. (현행과 같음)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u> 2.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u>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이</u>

로 성실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지원사업을-----.

② -----

-----지원사
업-----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사업-----

-----.

제29조(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

-----지원
사업-----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 ~ 5. (생략)

제9절 자활지원계정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 6. (생략)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신설>

- 2.·3. (생략)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1. (현행과 같음)
2. -----사회투자계정-----
3. ~ 5. (현행과 같음)

제9절 사회투자계정

제55조의2(사회투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원사업-----
-----사회투자계정-----
-----.

② 사회투자계정-----
-----.

1. ~ 6. (현행과 같음)
7. 사회투자계정-----
8. -----사회투자계정-----

제55조의3(사회투자계정의 용도) 사회투자계정-----
-----.

1. (현행과 같음)

1의2.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의 수행

- 2.·3. (현행과 같음)
4. 사회투자계정-----

5. 지원사업-----
6. -----사회투자계정-----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u>진흥원은 자</u> <u>활지원계정</u>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 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 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 와 <u>자활지원계정</u>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료를 받을 수 있다. ② <u>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u>에서 신용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 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5(준용규정) <u>자활지원계정</u>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 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 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보완계정”은 “<u>자활지원계정</u>”으 로 본다.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u>사</u> <u>회투자계정</u>----- ----- ----- ----- --<u>사회투자계정</u>----- ----- -----. ② -----<u>사회투자계정</u>----- ----- ----- ----- ----- ----- ----- ----- ----- -----. 제55조의5(준용규정) <u>사회투자계정</u>----- ----- ----- -----. -----<u>사회투자계정</u>----- -----.
--	--

- ‘사회연대경제’란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으나,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재 제22대국회에는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 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8건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데¹⁾, 이들 법안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정의에 대해 공통적으로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경제적 활동’을 중요 요소로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연대경제는 기존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 및 은행권에서의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부문에서 총 3조 9,209억원의 자금 공급이 이루

1) 2026. 3. 24. 기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대안반영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어졌음.

【표1】 2018년~2025년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실적

(단위: 억원)

유형	기관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31	63	78	85	76	72	61	3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86	639	911	1,117	1,024	1,056	1,346	1,34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2	85	84	115	94	74	92	49
	신협	77	245	453	476	264	239	177	167
	새마을금고	-	20	105	150	212	199	106	95
	(소계)	536	1,052	1,631	1,943	1,670	1,640	1,782	1,689
보증	신용보증기금	1,077	1,609	1,655	1,803	1,913	2,501	2,526	1,972
	지역신용보증재단	112	165	184	163	157	184	218	204
	기술보증기금	685	841	1,239	1,476	2,061	1,081	1,513	760
	(소계)	1,874	2,615	3,078	3,442	4,131	3,766	4,257	2,936
투자	한국성장금융	196	311	257	368	493	557	433	36
	한국벤처투자	96	645	724	703	507	244	258	151
	(소계)	292	956	981	1,071	1,000	801	691	187
계		2,702	4,623	5,690	6,456	6,801	6,207	6,730	4,812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은행권의 2025년 9월말 기준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대출 잔액은 1조 7,377억원 규모임.

【표2】 은행권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
대출 잔액	11,213	13,457	14,814	16,616	16,619	17,377

자료: 금융위원회

□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 및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민금융법」 제2조제5호²⁾ 및 시행령 제3조제3호³⁾은 대표적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중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업무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민금융진흥원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미소금융 사업⁴⁾ 중 하나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⁵⁾⁶⁾에게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지원하고, 사업수행기관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填) 사업
 -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 4.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4)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에게 ①창업운영, ②사회연대경제 사업, ③생활안정지원 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credit)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은 이를 재원으로 지원대상자⁷⁾에게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공급⁸⁾하고 있음.

-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 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지원한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3】 미소금융 사업 중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지원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금액	85.1	76.3	72.4	61.2	56.3
건수	141	122	129	124	103

자료: 금융위원회

□ 개정안은 최근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화 등 복합적인 경제·사회적 위기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업무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투자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법」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사업’을 서민금융진흥원과 사업수행기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추가하고, 기존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사회연대경제가 소득 양극화, 고용불안,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 제정⁹⁾ 당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

6) 동 사업에 대해서는 9개 민간 사업수행기관, 27개 지역법인, 11개 기업·은행재단 등 총 47개 기관을 선정함.

7)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8) 운영자금 대출 (최대 1억원, 3~6%대 금리, 최장 5년)

9) 2016. 3. 22. 제정, 2016. 9. 23. 시행

한 지원 사업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른 체계 정합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 자활지원계정의 명칭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과의 체계 정합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외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등을 지정하고 있음.

【표4】 개정안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 현황

구분	명칭	근거법률
사회연대 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마을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정책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셜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	

○ 이와 달리 현재까지 발의된 8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사회연대경제조직 외에도 농어업법인·조합·회사·단체, 신탁·새마을금고 등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에 따라서는 개정안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하나로 규정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제외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음.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제정될 경우 그 동안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체계가 일관되고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제정된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아, 사회연대경제조직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기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한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사업 외에 ‘투자사업’ 및 ‘출연·출자’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보증, 대출지원 및 금융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 등과 관련한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또는 출연·출자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민금융법」 제24조¹⁰⁾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투자 및 출연·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실제 투자 및 출연·출자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임.

1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표5】 서민금융진흥원 투자 및 출연·출자 실적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출자 현황	1 ^{주)}	1	1	1	1
출연 현황	0	0	0	0	0

주: 서민금융진흥원이 투자·출자한 회사는 (주)국민행복기금으로, 5,000만원의 장부가액(지분율 68.28%)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6년에 이관받음.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금융위원회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성장촉진’ (국정과제 81)과 관련하여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대출·보증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성에 힘을 기울이고, 출자 및 투자 등에 대해서는 상호금융 또는 민간자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 따라서 기존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던 사업방식 외에 투자 또는 출연·출자 사업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사업 중 하나로 명시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논의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개정안의 사업범위를 위 법률(안)에 따른 사회연대금융사업으로 직접 인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셋째, 개정안은 기존 ‘자활지원계정’¹¹⁾을 ‘사회투자계정’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률 상 계정 명칭 변경의 실질적인 실익이 낮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현행 ‘자활지원계정’은 사회적기업 지원 외에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저소득층 신용대출·신용보증사업, 소상공인 대출사업 등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¹²⁾을 운영 중이라는 점, 계정의 명칭 변경 시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시스템 수정 등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6

11) 자활지원계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12) 2025년말 기준 자활지원계정 주요 사업 규모(비중) :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6,672억원(59.4%),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004억원(17.8%), 미소금융(사회적기업 제외) 1,476억원(13.1%), 햇살론유스 762억원(6.8%), 미소금융(사회적기업) 60억원(0.5%), 기타 비금융사업 84억원(0.8%) 등

【참고자료】

자활지원계정 주요내용

- **(법적 근거)** 「서민의 금융생활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호에 따라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

* 기존 휴면예금등관리계정 내 기부금계정으로 운영되었으나 '21.10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자활지원계정으로 분리 신설

- **(재원)** 휴면계정 전입금, 기부금, 정부출연금 등

- **(주요사업)**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의 근본적인 자활지원을 위한 자금공급, 자산형성 지원, 금융교육 사업 등 운영

종류		지원내용
대출	미소금융사업	▶ 사업수행기관 등을 통해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창업·운영자금 등 지원 * 최대 7천만원, 금리 연 4.5%
		▶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 운영자금 지원 * 최대 1억원, 금리 연 3~6%
		▶ 취약서민대상 서금원 직접대출 *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 최대 7천만원, 금리 연 4.5%_
		▶ 지자체 및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한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상 대출 * 점포당 1천만원 이내, 연 4.5% 이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 대상 긴급생활자금대출 * 최대 100만원, 금리 연 9.9%~12.5%

종류		지원내용
	햇살론유스	▶ 저소득 청년(만 34세이하)대상 생활자금대출 * 최대 1,200만원, 금리 연 3.6%~5%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으로, 청년 납입금에 대해 정부가 소득구간별 차등 매칭 지원 * 만기 5년 / 정부 매칭률 3~6% / 월 최대 납입금 70만원
	청년미래적금 (26.6월 출시예정)	▶ 일정소득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청년 납입금액에 일정비율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비과세 적금상품 * 만기 3년 / 정부 매칭률 6% ^{일반} · 12%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 / 월 최대 납입금 50만원
	소액보험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아동, 고령자 등취약계층의 보험가입 및 유지를 지원 * 요건 충족시 상해보험 등 자동가입
	미소드림적금	▶ 미소금융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일정금액을 저축 하면 서금원이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 월 최대 20만원, 이자 최대 연10% (은행 5%+서금원 5%)
비금융 사업	복합지원, 컨설팅, 금융교육 등	▶ 지자체와 업무 협업을 통해 금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복합지원 상담 등 제공 ▶ 군장병, 초임장교, 신용사면자 등 신용관리 취약 계층 대상으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